

대법원 2019도2767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관실(02-3480-1451)

대법원(주심 대법관 박정화)은 2019. 5. 30. 피고인 이○○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, ‘피고인 이○○이 지방의회 의원임에도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5,000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’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(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9도2767 판결)

1. 사안의 개요¹⁾

가.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○○ 부분의 요지

- 피고인 이○○은 2014. 6. 4.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함평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음
- 피고인 이○○은 2015. 11. 25. 다른 피고인²⁾에게 신문사 창간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, 그에 따라 다른 피고인 측에게 2015. 11. 30. 3,000만원, 2015. 12. 31. 2,000만 원 합계 5,000만 원을 건네줌³⁾

나. 소송경과

- 제1심 : 유죄, 징역 1년
- 원심 : 유죄,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

1) 이하 피고인 이○○ 부분만 정리함

2) 이 사건 1심, 2심, 3심의 공동피고인임

3) 그 후 피고인 이○○은 2018. 6. 13.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에게 함평군수로 당선되었음

2. 대법원의 판단

가. 쟁점

- ▣ 피고인 이○○이 다른 피고인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, 지역 신문사의 설립을 위하여 자금을 출연한 것이지
 -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부인 주장
- ▣ 피고인 이○○이 돈을 준 다른 피고인이 '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' 또는 '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'에 해당하는지
 -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는 '국회의원·지방의회의원·지방자치단체의 장·정당의 대표자·후보자(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)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·단체·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·단체·시설에 기부행위(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)를 할 수 없다.'라고 규정하고 있음
- ▣ 피고인 이○○의 기부행위의 공소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
 -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는 '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(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 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)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.'라고 규정하고 있음

나. 판결 결과

- ▣ 상고기각 (유죄 확정)

다. 판단 근거

- ▣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, 피고인 이○○이 다른 피고인에게 돈을 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음
 -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'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'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·친지·친구·직장동료·상하급자나 향우회·동창회·친목회 등

일정한 혈연적·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함

- 피고인 이○○이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에 대해 2018. 6. 13.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여부를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음

-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의 '당해 선거일'이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,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행위가 있는 날로 할 것인지 여부는 그 선거범죄가 범행 전후의 어느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에 따라 좌우됨

-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그 이전에 있었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보다는 향후 실시하게 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,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여부를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음

3. 판결의 의의

-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기부행위 상대방의 의미와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의 공소시효의 기산일인 당해 선거일의 의미에 관한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확인한 사안
-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이고, 법리오해가 없음을 확인한 사례